

접 수	의안과 - (20 . . .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의 수련담당 강사 자격에  
          관한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건의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3 년 8월 11일

청 원 인

성 명 : 구영은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성명 : 구영은
건 명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의 수련담당 강사 자격에 관한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3년 8월 11일
<p>소개의견</p> <p>.청원인 구영은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입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서 2013년 8월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 중 의결된 안건 하나가 『청소년수련시설의 단기간 근로자 수련담당 강사의 자격에 관한 개정안』입니다.</p> <p>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는 비정규직 종사자의 사전교육 의무화가 되어있지 않다. 그러므로 수련시설에서 단기간 근로자 고용 시 1주간의 교육을 받아야한다..』 라는 것입니다.</p>	

## 청원서

### 1. 제안이유

최근 해병대캠프에서 학생들이 물에 빠졌지만 해당 교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때문에 수련시설에서 청소년 지도자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한 자만이 수련 담당 강사로 채용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 또는 캠프가 봄, 가을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비성수기인 여름과 겨울에는 수련원이 운영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수련 담당 강사를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법률에는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교육 기관이나 자격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해병대캠프나 수련원 등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때 하루 정도의 짧은 교육 기간을 거치고 바로 투입되어 수련 활동 참가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련 시설 아르바이트생의 자격 조건을 제한시키고자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청원합니다.

### 2. 주요골자

>현행 ‘청소년 활동 진흥법 시행령’ 19조에 ‘근로자 고용시 1주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예상되는 특정 활동은 그에 따른 자격증을 필수로 한다. 이 때, 특정 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신구문 대조표-

현행	개정문
<p>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p> <p>① 수련시설은 그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수련시설의 수련거리운영, 생활지도,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종사자교육 등 운영기준은 수련시설 종류별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수련시설 운영기준)</p> <p>① 수련시설은 그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 안전, 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수련시설의 수련거리운영, 생활지도,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종사자교육 등 운영기준은 수련시설 종류별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③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시 1주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예상되는 특정 활동은 그에 따른 자격증을 필수로 한다. 이 때, 특정 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청원인 성명 : 구영은